2025년 광고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 제안요청서

2025. 3



제안요청 관련 문의					
입찰 및 계약 관련 경영지원팀 강규철 사원 (02-731-7152)					
과업내용 및 제안서 작성 관련 미디어데이터팀 황성득 차장 (02-731-7418)					

목 차

Ι.	용역 개요	1
•	용역명, 수행기간, 추진배경 및 목표, 과업범위, 추진일정	
	네안 요청 사항	3
	세 출서류 및 제안서에 관한 사항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(입찰 및 제안서 제출, 제안서 관련 사항(작성,제출,목차,발표)	3
	입 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	2
	흩임서식 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 9 입찰 제출 서류, 보안 관련 문서 등)

I. 용역 개요

1. 사업일반

o 용역명 : 2025년 광고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

o 수행기간 : 계약체결일부터 2025. 12. 31까지

o 사업예산 : 110,000,000원 (부가세 포함)

2. 추진배경 및 목표

- o 광고제작시장 구조(광고주→광고회사→제작사)로부터 생겨나는 불공정 거래 요소에 대해 조사
- o 실태 파악을 통해 광고제작시장 구조 개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와 추진 방향을 도출
- o 기초 통계자료 공급을 통한 학계 연구 지원 및 광고산업 진흥

3. 과업 범위

구분	추진내용
가. 조사대상 리스트	■ 전년도 조사 수행 과정에서 확보한 조사대상 리스트를 기반 으로 조사결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규모 및 구성 보완
(광고제작 업종 종 사자) 정비	- 광고영상 제작업 종사자들의 근무형태 및 직종에 따른 적절한 응답표본 확보를 위한 리스트 구성(과년도 리스트 적합성조사 및 보완, 추가 확보)
다. 광고제작 노동환 경 실태조사 설문	■ 광고제작 종사자들의 노동환경 및 개선점에 대한 설문지 구 성 및 실사, 보고서 편집 발간
라. 조사 활용도 및 신뢰도 제고를 위 한 FGI	■ 설문지 구성, 조사대상 리스트 확보, 실사결과 분석 및 보고 서 작성 단계에서 조사 신뢰도 제고와 보고서의 충실성 확보 를 위한 전문가 자문 및 FGI 실시

구분	추진내용					
마. 조사결과 분석 및 보고서 편집	■ 조사결과에 대한 종합분석 및 보고서 편집, 발간					

※ 세부 내용은 Ⅱ장 참조

4. 추진 일정(예정사항)

내용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조사용역 입찰공고 및 업체 선정											
과업내용 협의 및 계약 체결											
조사방법 및 상세 일정 협의											
조사대상 리스트 구성											
노동환경 조사 설문 문항 작성											
노동환경 조사 실시											
조사 중간보고											
보완 조사 및 심층 인터뷰 진행											
조사 결과 데이터 가공 및 분석											
최종 보고서 작성 및 발간											
과업평가·행정절차 등 후속작업											

※ 세부 일정은 진행상황 및 협의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

Ⅱ. 제안 요청사항

1. 조사대상 리스트의 구성 및 관리 방안

- 1) 광고 제작 종사자 리스트 구성
- o 광고제작업의 노동환경 현황과 실태파악을 위해, 설문 대상이 될 수 있는 광고 제작 종사자 리스트를 작성
 - ①전년도(2024년) 한해간 1편 이상 광고 제작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, 종사자 1인 이상 <u>업체의 광고제작 관련 업무 담당자</u> 및 ②특 정 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프리랜서 리스트 작성
 - * '광고제작 업무'는 기획, 미술, 감독, 촬영 등 광고소재 제작에 특정하게 발생하는 업무를 말하며, 광고제작 과정에 관련된일이라 해도 회계, 기타 행정 등 일반 업무만 관련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음
 - 필요한 유효 응답 표본수(회사소속 노동자 및 프리랜서 각 500명 이 상)를 확보하기 위하여 예상 응답률을 감안한 조사대상 리스트 구 성 목표 규모 제시
 - 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사대상 광고 제작 종사자 리스 트를 확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거나, 기간을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설문조사 기간 등 다른 세부 과업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병행 실시하여 최종보고서 제출 시한을 맞출 수 있는 계획을 제시

2) 광고제작 종사자 리스트 관리 방안

- o 2025년도 조사를 통해 확보될 제작업체 리스트와 종사자 리스트는 향 후 조사에서도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함
- 0 리스트 확보와 설문 표본 확보를 위한 접촉 과정에서 업체 정보와 개 인정보의 향후 활용과 제공에 대해 적법한 동의를 얻어야 함

- (개인정보 활용 동의) 2025년 광고산업실태조사 진행을 위해 한국방 송광고진흥공사와 2025년 용역 수행 조사회사가 조사대상 개인 정 보를 필요 기간동안 활용하는 데 대한 동의
 - 보유정보 : 성명, 전화번호, 이메일
 - 보유 관리 주체 :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, 2025년 광고제작 노동 환경 실태조사 용역 수행사
 - 보유기간 : 2025년 조사 종료 시점부터 2년간
- (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) 내후년도(2027년) 조사대상 리스트 구성 시 접촉을 위해 동 조사의 내후년도 조사회사에 개인정보(연락처, 성명 포함)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동의
 - 보유정보 : 성명, 전화번호, 이메일
 - 개인정보 제공받을 제3자 : 2027년 광고산업실태조사 용역 수행사
 - · 보유기간 : 2027년 8월까지

2. 설문 진행 및 분석, 보고서 작성

- 1) 광고산업 노동환경 실태조사 및 추가 이슈 설문
 - o (설문 목적) 광고제작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, 보수, 작업환경, 계약조건 및 관행, 만족도 등 노동환경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 실시
 - o (설문 구성) 고용구조, 노동시간 및 보수 등 환경적 요소, 직업만족도(근로시 간, 보수수준, 워라밸, 복지, 고용안정성), 계약실태(계약단위, 상대, 시점, 기간, 내용 등) 등 개인별 사항에 대해 고용구조별/직종별/직급별 인력 대상 조사
 - 심층인터뷰와 설문조사 병행, 이슈 및 전체 시장현황 총체적 조사
 - 시계열적 연속성을 고려, 2023년도 설문 문항 및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 방향을 제시
 - ※ 다음은 2023년 조사 항목이며, 실제 설문 문항 및 조사 결과는 '2023 광고제작 노동환경 실태보고서' 책자 참조
 - ※ 2023 광고제작 노동환경 실태보고서 책자는 국립중앙도서관, 국회도서관,

kobaco 광고도서관(잠실 한국광고문화회관 소재)에 비치되어 있으며, 별 도로 파일 필요시 kobaco 미디어데이터팀(02-731-7418)에 요청

<(예시)'23 광고제작노동환경실태조사 설문 문항 구성>

구분	설문 문항
 제작	1) 광고제작 참여단계
분야	2) 근로 형태
및	3) 직무별 직무 만족도
경력	4) 광고제작 분야 평균 경력
계약	1) 광고제작 평균 참여 횟수
관련	2) 주된 업무 의뢰처
	3) 광고제작 계약 형태 및 유형
	4) 계약 내용 및 만족도
	5) 계약서 항목 중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
	6) 업무 의뢰
노동	1) 노동일수 및 시간
시간	2) 월평균 소득
및	3) 보수를 받은 통상적인 시점
보수	4) 기본 보수 이외에 별도로 지급받은 것
	5)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경험 및 이유
————	6) 광고제작업 외 타 직종 종사 경험
보험	1) 4대 보험 2) 건강보험 가입 형태
	2) 신성도함 가입 형태 3) 예술인 고용보험 인지 여부
	3) 에돌인 고등도법 인시 여구 4) 고용보험 가입 형태 및 미가입 이유
	4) 고등도됨 가입 형태 및 미가입 이유 5) 상해보험 가입 형태 및 미가입 이유
 직업	1) 현재 일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만족하는 부분
면족도 만족도	2) 다른 분야 직업으로 바꿀 의향
_ <u>_ 가</u> 광고	1) 적절한 1일 평균 노동 시간
제작	2) 광고 제작 중 충분한 휴식 및 식사 보장
노동	3) 광고 제작 이후 다음 광고 제작 사이 휴식시간 충분 정도
환경	4) 주로 작업하는 장소
	5) 일이 안전상 위험하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
	6) 업무 관련 부상이나 질병 발생 경험
	7) 안전교육 진행 여부
	8) 건강검진 수검 여부
	9)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해결 방안
	10) 안전성, 안전의식 및 위험수준에 대한 평가
	11) 광고제작 노동환경의 성차별, 폭력
	12) 광고제작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적 조치
	13)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한 캠페인 필요 정도
	14) 광고 제작 현장의 불편사항 및 개선 필요 사항

2) 설문 기타 사항

- o (FGI) 설문 전후 단계에서 조사 대상자 일부 및 관련 전문가 그룹에 대한 FGI를 실시하여야 함
 - (설문 전) 중점 사항을 파악하고 관련된 구체적 질문 항목 구성에 활용
 - (설문 종료 후) 설문을 통해 파악된 중요 사항에 대한 상세 정보(답변 경향에 대한 의견, 실제 사례 등)를 획득하여 보고서 완성도 제고
- o (설문 문항) 설문 취지가 응답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문구 작성
 - 2023년도 설문 문항(문구)에서 수정 개선하는 방식으로 제시 가능
- o (설문 방식) 구조화된 설문지를 토대로, 조사대상자 응답률을 높여 실사 일정을 단축시키고 충분한 수의 유효 표본을 확보하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제시
 - 대면/전화/온라인 등 조사방법의 활용 방안
 - 조사 신뢰도 확보를 위해 2023년 노동환경 실태조사 표본수(1,086명)와 유사한 규모(최소 1,000명 이상)의 유효 응답 표본을 확보
 - 회사소속 노동자와 프리랜서의 표본 비율은 1:1에 근사하도록 구성
 - 회사소속 노동자의 경우 광고대행사와 광고제작사를 균형 있게 포함
- o (응답 분석 및 보고서 작성) 다음을 추가적으로 감안하여 보고서 작성
 - 동일 문항에 대한 회사소속 노동자/프리랜서 응답 교차분석 및 직종 별, 직급별 분석단위에 대한 응답 차이 분석
 - 주요 문항에서는 과년도 조사결과와의 응답 결과 추이 분석(감소, 유지, 증가 사유 추등을 FGI 결과를 종합하여 추정 제시) 포함
- (조사 모집단 관련) 확보된 제작업체 리스트와 종사자 리스트를 기반으로 하여, 조사대상 모집단을 개념적으로 정의하고, 다음과 같은 작업을 시도할 수 있음

- 모집단의 총 숫자에 대한 추정값 산출
- 조사 결과 및 FGI 등의 결과를 기반으로 조사 모집단 특성에 대해 추정

3) 보고서 작성

- (보고서 부수) 최종 조사 보고서 인쇄본은 100부를 인쇄하며, 제작 규격 은 추후 발주처와 협의
- o (보고서 제출 시한) 제출은 과업내용서에 시한(10월~12월)을 협의
- o (보고서 내용 협의 및 기타) 인쇄용 편집본 확정을 위하여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거치고, 다음 사항에 유념
 - 보고서에 사용되는 글자체(폰트)가 인쇄뿐 아니라 pdf포맷으로 웹상 에 공개되는 데도 민형사상 어떤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주의
 - 발주처는 특정 폰트 사용을 요구하지 않으며, 따라서 조사회사는 보고서에 사용된 폰트에 대하여 외부에서 민사적 문제 제기 등이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책임을 짐

3. 기타 사항

- (일정 및 인력 운용) 최종 보고서의 편집 및 제출 시한은 엄수되어야 하며, 기타 일정은 만약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발주처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고, 그 전에 일정 준수를 위해 인력의 집중 투입 운용 등 가능한 조치를 검토해야 함
- (정기·수시 보고) 계약체결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 추후 과업내용 서에서 협의된 양식으로 주간, 월간 보고를 실시하고, 인력 변경 이나 일정 지연 요인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수시 보고를 실시함
- (원자료 및 권리) 보고서 파일 뿐 아니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자료(조사대상 리스트, 응답 마이크로데이터 등)도 사업 결과물로 제출되어야하며, 특히 조사대상 리스트는 조사 및 리워드 제

공시에 발주처에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과 내후년도 조사를 위한 제 3자 제공에 대한 동의도 활용기간을 명시하여 함께 얻도록 함

- (리워드) 조사 대상에게 제공하는 리워드 수준은,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 적절한 수준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대한지급 증빙을 추후 제출
- (용역 완료시 제출자료) 용역 완료시에는 용역 완료계와 함께 사업 산출물 일체(보고서 인쇄본 및 파일, 설문 응답 로데이터, 조사대상 리스트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)와 사업 수행시 소요된 비용에 대한 증빙 일체를 제출하여 검수받아야 함

Ⅲ. 제출서류 및 제안서에 관한 사항

1. 입찰 및 제안서 제출

o 입찰마감 : 2025년 3월 31일(월) 14:00 까지 (나라장터 접수마감)

o 제출방법: 나라장터 통해 업로드

※ 용량 등으로 업로드에 문제가 있는 경우 메일 제출(sdhwang@kobaco.co.kr)

· 계약절차 및 입찰 문의 :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경영지원팀 강규철 사원 (02-731-7152)

· 제안서 및 구비서류 문의 :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미디어데이터팀 황성득 차장 (02-731-7418)

o 구비서류 (V장 붙임서식 참고)

제출서류	제출방법
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(기타문서)	나라장터
사업자등록증 사본 (기타문서)	"
중소기업 확인서 (기타문서)	"
청렴계약이행서약서 (기타문서)	"
퇴직자영입현황확인서 (기타문서)	"
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(컨소시엄의 경우 한) (기타문서)	"
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파일 (정량, 정성)	"
기타 붙임서류 (V장 참고) (기타문서)	"
기타 요청 서류	자료 요구 시

※ 제출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설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

2. 제안서 제출 형태

○ 제안서에는 <u>업체명과 작성자의 암호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일체의 표시를</u> 할 수 없으며 표지에는 다음 표만 기재

사 업 명	2025년 광고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
번 호	

- 제안업체의 일반사항은 제안서에 포함할 수 없으며 <u>붙임의 서식에 따라</u> 작성 후 제안서와 별도로 제출(V장 참고)
- 0 제출 형식
 - 제안서는 40페이지 한도 내에서 PPT, 아래아한글, MS워드 등으로 20 분 제한시간 내에 발표 가능하도록 자유롭게 구성(제안서 하단에 쪽 번호 매길 것)
 - 필요시 심사위원의 빠른 내용파악을 위해 제공할 요약 자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으나, 요약 자료를 제작할 경우 제안서와 함께 파일이 제출되어야 하며, 제안서 원본에 없는 내용이 요약 자료에 포함되어 서는 안 됨
- ㅇ 제안서는 40페이지 한도 내에서 작성하되 다음 사항들을 중심으로 기술
 - 제안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사항
 - 동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안 업체의 사업관리 방안

3.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

o 제안서 구성은 다음 페이지에 제시된 목차를 준수하고 제안요청서를 참 조하여 작성

목차	주요 작성내용
I . 제안개요	
4 시어므로 미 뷔이	o 용역 수행에 대한 이해도
1. 사업목표 및 범위	o 제안 목적 및 추진방향, 용역 수행 능력 등
2. 제안 내용의 특징	o 제안사가 타사와 차별화될 수 있는 장점
과 차별성	o 투입 인력의 전문성 및 인력 운용계획
II. 사업수행	
1. 사업수행 체계	o 용역 수행을 위한 조직의 구성과 운영 방안
이 지어스레 비이	o 제안 요청서 3~8페이지 '제안 요청사항'에 상응하는 제안 사항과 사업 수행 능력에 대해 강조하고자 하는 점(구체적으로)
2. 사업수행 방안	o 본 용역 수행을 위한 (경쟁업체 대비) 제안사의 강점
	o 기타 목차에 포함되지 않으나 필요한 제안 사항 기술 가능
Ⅲ. 사업관리	
	o 과제별 수행일정, 수행인력(수)
1. 관리계획	o 사업비 집행계획(예산 내 집행비율로 표시, 금액 표시X)
	o 실사 관리방안

- 제안서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, '∼을 할 수 있다' 혹은 '∼이 가능하다' 등의 모호한 표현은 '할 수 없다'로 평가함
- 제안서에 기술된 모든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, 허위사실의 경우 선정을 무효화함
- 복수 선택의 제안도 가능하나, 이 경우 장단점을 비교하여 제안사의 추천안을 명시하고 그 추천 사유를 함께 기술하여야 함
- o 제안서는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, 영문 약어를 사용할 경우 Full Length 용어를 포함한 용어 해설을 별도 주석으로 기재해야 함
- o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,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
- ㅇ 제안서 기재사항 관련, 발주처가 입증서류 요구시 이를 제시해야 함
- ㅇ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 제출할 수 있음

4. 제안서 효력 및 기타

- o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 경할 수 없으며, 수행기관으로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하게 됨
-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필요에 따라 제안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됨

Ⅳ.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

1. 입찰 및 낙찰 방식

- 0 제한(총액)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
- ※ 「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(시행 2024. 12. 24. 대통령령 제35088호)」제 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, 기획재정부 계약예구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(시행 2024. 9. 13.),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(시행 2024. 8. 21.) 제4조(구매 증대)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(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)에 의한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

2. 입찰 참가 자격

- ㅇ 국가전자조달시스템(G2B) 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
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2조(경쟁입찰의 참 가자격)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자
- 「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발급된 〈중·소기업·소 상공인 확인서〉를 소지한 업체
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76조제1항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
-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할 수 있음
- ㅇ 참여업체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안할 수 있음
 - 컨소시엄 구성 참가의 경우, 컨소시엄 참여업체 간의 공동 책임, 관리,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안서에 필히 포함하여야 함

3. 제안서 평가 방식

- ㅇ 기술평가 90%, 가격평가 10%의 종합평가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
- 기술능력은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사가 관련 전문가를 중심
 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, 평가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평가함
 - ※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<u>기술능력 분야 배점의 85%에 미달할 경우 협상</u> 적격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('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' 제8조제1항)
 - ※ 총평점이 동일한 경우, 기술능력 평가 고득점자 우선

4. 기술능력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

- 예정된 평가위원회 일정 및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,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공사에서 즉시 업체에 통보함
 - 일시(예정) : 2025년 4월 1일(화) 14:00
 - 장소(예정) :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7층 kobaco PT룸
- o 발표는 제출된 제안서 및 요약 자료로 시행하며, 사전에 명시한 사업관리자(PM)가 발표를 하지 못하거나 사업관리자(PM)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위원이 서면으로 평가
- 제안서 발표는 원칙적으로 나라장터의 제안 업체 표시 순으로 하며, 발표 20분, 질의・응답 20분 이내로 함
- ※ 소요시간은 제안서평가위원회 의견 및 제안업체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5. 평가항목 및 배점

1) 기술능력 평가기준

평가항목		세부평가내용	배점
	수행기관	제안 업체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?	20
	전문성	ㅇ 본 연구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?	10
	(20)	ㅇ 본 연구용역과 관련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가?	10
	사업	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?	20
	이해도	ㅇ 연구주제 관련분야의 특성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는가?	10
	(20)	ㅇ 본 연구용역의 목적, 필요성, 활용도를 이해하고 있는가?	10
기		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시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?	35
술 평	사업수행 및 관리 능력 (35)	o 사업 수행을 위한 분석역량을 갖추고 있는가?	10
가 (90)		분야별 전담팀 구성 및 운영 등 사업 관리 인력에 대한 운영계획이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?	10
		ㅇ 세부 수행 단계별 결과물 도출을 위한 체계성을 확보하고 있는가?	10
		ㅇ 사업 추진 일정과 사업비 집행계획이 합리적으로 제시되고 있는가?	5
	조사방법 타당성	사업 수행 시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?	15
	(15)	ㅇ 연구방법의 타당성, 차별성이 제시되고 있는가?	10
		ㅇ 주요 제안요청 사항에 대한 합리적 접근방법이 제시되고 있는가?	5
	소 계		90
フ)격평가 (10)	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경영지원팀에서 평가입찰 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산정	10
		합 계	100

※ 기술능력 총점은 90점으로 평가항목, 평가요소별 배점은 평가위원회에서 조 정될 수 있음

2) 입찰가격 평점산식

ㅇ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

평점 =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
$$\times \left(\frac{$$
최저입찰가격}{해당입찰가격}\right)

- 최저입찰가격 :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, 입찰가격이 추 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
- 해당입찰가격 :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
-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 를 포함하여 적용하고,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 격으로 적용
- ㅇ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

평점 =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
$$\times\left(\frac{$$
 최저입찰가격 $}{$ 추정가격의80%상당가격 $}\right)$ + $\left[2\times\left(\frac{$ 추정가격의80%상당가격 $-$ 해당입찰가격 $}{$ 추정가격의80%상당가격 $-$ 추정가격의70%상당가격 $}\right)\right]$

- 최저입찰가격: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, 입찰가격이 추 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〈개정 2015.9.21.〉
- 해당입찰가격: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, 입찰가격이 추정 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%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〈개정 2015.9.21.〉
-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,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 로 적용
- 이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
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

6. 협상 절차

- ㅇ 협상순위 선정
 - 우선순위 협상 대상자가 협상 내용에 대해 합의한 경우 다른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
 - 우선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
 -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

ㅇ 협상내용과 범위

-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과업내용, 이행일정,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,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
- 가격협상 기준 가격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 으로 함
- ㅇ 협상절차 및 계약체결
 - 협상이 성립되면 계약당사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
 -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공사 규정, 국가계약법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름
- ㅇ 협상결과에 대한 조치
 - 협상이 완료된 뒤, 그 결과는 개별로 통보하고, 통보일자는 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함

7. 기타 유의사항

1) 입찰 및 가격 관련

- 본 용역의 입찰 및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, 기재 부 계약예규를 준용하여 시행함
- ㅇ 입찰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
- o 가격 산출내역서 작성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(기재부 계약 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)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하여야 함

2) 제안 및 협상 관련

- ㅇ 제안서 작성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제출자의 부담으로 함
- 이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하며, 계약 이후에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 내용과 상이하게 시행될 경우 일방적 계약 해지 및 배상청구가 가능함
- o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, 계약서에 명기한 사항은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
-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업추진 내용 등은 계획사항이며, 공사의 사정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
- ㅇ 제안서와 계약서 해석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공사의 해석이 우선함
- 평가위원별, 항목별 제안서 평가 내역은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, 관련사항은 발주처의 고유권한이므로 제안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
- 이 제안 평가결과 선정된 협상대상 업체에 대해 협상 전 동일 건에 대해 제안 내용을 상향 조정할 수 있으며,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

3) 용역 관련

-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용역 수행자가 공사에 제출한 자료 일체에 대한 권리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귀속되며, 따라서 용역 수행자는 관련 자료를 공사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공개 또는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판매 또는 양도할 수 없음
-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, 사용권(라이선스) 또는 특허권권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
- 아 사업 수행 완료 후 결과가 불량할 경우 향후 공사에서 실시하는 사업 참 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
- o 중요한 질문 사항은 문서 질의를 원칙으로 하고, 전화 또는 구두 질의는 가능하나 전화 또는 구두 질의·응답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

Ⅴ. 붙임서식

- 1. <서식 제1호> **제안사 일반현황**
- 2. <서식 제2호> 조직 및 인원현황
- 3. <서식 제3호> **참여인력 이력사항(총괄표)**
- 4. <서식 제4호> 참여인력 이력사항(개인별)
- 5. <서식 제5호>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
- 6. <서식 제6호> 청렴계약이행서약서
- 7. <서식 제7호> **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**
- 8. <서식 제8호> 공동수급표준협정서(공동이행방식/분담이행방식)
- 9. 사업보안관리 관련 문서(필요시 IT팀 부가)

<서식 제1호>

제 안 사 일 반 현 황

(단위 : 명, 건수)

기 관 명			대 표	E 자
사 업 분 야				
소 재 지				
전 화 번 호				
설 립 년 도	년	월		

재정상황(2024년 결산)*	자 본 금	매 출 액	순 이 익	비고
(단위 : 천원)				
용역실적	2022년	2023년	2024년	비고
(건수/천원)				
주 요 연 혁				
주요사업내용				

* 제안서 마감 1일 전 기준 2024 회계년도 결산이 끝나지 않은 제안사의 경우 2023년 결산 기준으로 기재하고, 2023년 결산 기준임을 표 하단에 명시하여 제출

<서식 제2호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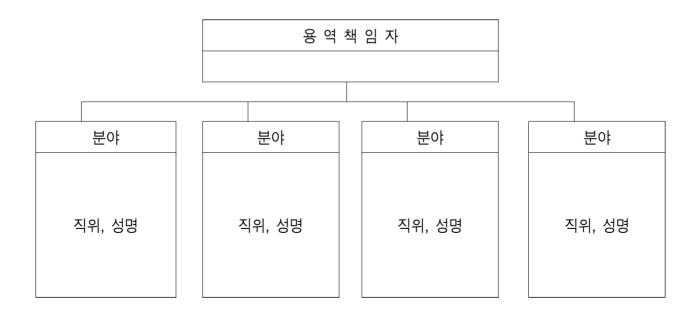
조직 및 인원현황

1. 조직(예시)



2. 인원현황

3.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참여 인력(예시)



※ 입찰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입찰공고에서 계약의 종결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총괄관리자 에 해당하는 사업관리자(PM)를 명시

참여인력 이력사항(총괄표)

성 명	연 령	직 위	최종학력 (전공)	자격증	주요경력	비고

<서식 제4호>

참여인력 이력사항(개인별)

성 명			생년월일	<u></u>	소 속		직 책	
최종학력	대호		학교 전	!공(학위)	해당분야근무경력			
		대호	학원 전	!공(학위)	자 격 증 (자격소지후 근무경력)			
본사업 참여기간					참여율		%	
본사업 참여임무								
				용 역 수 행	경 력			
사 업	명	사입	ゴ 개요	참여기간 (년월~년월)	담당업 <u>-</u>	무 및 직위	발 주 처	비고

<서식 제5호>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

공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, 아래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. 정보주체가 되는 이용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,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

공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.

0 2024년 광고제작 거래 실태조사 용역 제안서 평가 및 확인

2.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

공사는 『2024년 광고제작 거래 실태조사 』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 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

- o 수집항목 : 사업투입인력명단 및 참여인력이력사항에 명시된 인력의 개인정보 (성명, 소속, 직책, 연락처, 연령, 학력, 자격사항)
 - 자격증사본, 재직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7자리 * 표시 혹은 삭제

3.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

- o 5년간 보유
- 0 보유목적
 - 1. 제안서평가
 - 2. 내부, 감사원 감사 등 감사목적

4.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안내

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거부를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, 본 개인정보 수집이 불가피한 평가를 위한 서류의 진위성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평가에 영향이 있습니다.

상기내용을 숙지하시고 성명, 소속, 직책, 연령, 학력, 자격사항 등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 하십니까?

□예 □아니오 성명 (서명)

<서식 제6호>

청렴계약이행서약서

제1조(목적)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. 용역.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) ①공사.용역.물품구매 등의 입찰과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.간접적으로 금품.향응 등(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)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3조(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)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.

- 1.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.
- 2.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한 자,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한국방송광고진홍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.
-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.
- ③입찰.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.간접적으로 금품, 향응 등(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)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.
- 1. 입찰.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(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<u>학)</u>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낙찰을 받은 자,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.
- 2.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,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(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)을 제공한 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.
-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.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.

제4조(계약해지 등) ①입찰,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(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)을 제공한자는 다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.

- 1.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.
 - 2. 계약체결 이후 과업착수 이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.
- 3. 과업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. 다만, 계약의 성격, 진도, 규모, 계약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- 4.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.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.
- 제5조(기타사항) ①업체의 임직원(하도급업체 포함)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<u>(친인척 등에 대한</u>

<u>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</u>)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.

②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(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)를 하지 아니한다.

20 . . .

서약자 :

대표 (인)

<서식 제7호>

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

1. 공고번호 :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입찰공고 제20 - 호

2. 입찰건명 :

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퇴직자(퇴직 후 2년이내) 영입(근무)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.

성 명	직급 (간부·보직자 직급)	입사일 (20XX.XX.XX)	근무기간 (단위:개월)	비고

※ 퇴직자 영입현황이 없을 경우 '해당없음'으로 기재하여 제출

상기와 같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퇴직자의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(퇴직후 2년 이내)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침을 따르겠습니다.

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, 만일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(축소, 누락포함) 평가대상자에서 제외,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.

20

신고자 회사명:

대표자 : (인)

※ 이 신고서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76조1항8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[별표2], [10의 나]에 따라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.

<서식 제8호>

I. 공동수급표준협정서(공동이행방식)

제1조(목적)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,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·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·입찰·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.

- 1. 계약건명 :
- 2. 계약금액:
- 3. 발주자명 :

제2조(공동수급체) 공동수급체의 명칭, 사업소의 소재지,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.

- 1. 명 청 : ㅇㅇㅇ
- 2. 주사무소소재지:
- 3. 대 표 자 성 명 :

제3조(공동수급체의 구성원)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.

- 1. ㅇㅇㅇ회사(대표자 :)
- 2. ㅇㅇㅇ회사(대표자 :)
-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.
-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,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.

제4조(효력기간)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,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. 다만,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·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.

제5조(의무)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·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 을 약속한다.

제6조(책임)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. 다만,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

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.

제7조(하도급)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제8조(거래계좌) 계약예규 「공동계약운용요령」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,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.

- 1. ㅇㅇㅇ회사(공동수급체대표자) : ㅇㅇ은행, 계좌번호 ㅇㅇㅇ, 예금주 ㅇㅇ ㅇ
 - 2. ㅇㅇㅇ회사 : ㅇㅇ은행, 계좌번호 ㅇㅇㅇ, 예금주 ㅇㅇㅇ

제9조(구성원의 출자비율)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- 1. 000: %
- 2. 000: %
-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.
 - 1.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
- 2.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, 해산, 부도, 법정관리, 워크아웃(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), 중 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 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
 -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,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.

제10조(손익의 배분)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.

제10조의2(비용의 분담)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, 재료비, 노무비,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.

-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,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-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,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계좌에 보관하며,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.

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. 다만,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
제11조(권리·의무의 양도제한)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·의무를 제3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.

제12조(중도탈퇴에 대한 조치)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. 다만,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1.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
- 2. 파산, 해산,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 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
- 3.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, 해산,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
-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 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. 다만,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, 실적, 시공능력공 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 을 충족하여야 한다.
-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 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.
-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.

제13조(하자담보책임)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. 다만,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.

제14조(운영위원회)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

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.

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
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.

년 월 일

- ㅇㅇㅇ (인)
- ㅇㅇㅇ (인)

Ⅱ. 공동수급표준협정서(분담이행방식)

제1조(목적)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,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·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·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.

- 1. 계약건명 :
- 2. 계약금액:
- 3. 발주자명 :

제2조(공동수급체) 공동수급체의 명칭, 사업소의 소재지,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.

- 1. 명 청 : ㅇㅇㅇ
- 2. 주사무소소재지:
- 3. 대 표 자 성 명 :

제3조(공동수급체의 구성원)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.

- 1. ㅇㅇㅇ회사(대표자:)
- 2. ㅇㅇㅇ회사(대표자:)
-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.
-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,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.

제4조(효력기간)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,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. 다만,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.

제5조(의무)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·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 을 약속한다.3987

제6조(책임)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.

제7조(하도급)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.

제8조(거래계좌) 계약예규 「공동계약운용요령」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,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.

- 1. ㅇㅇㅇ회사(공동수급체대표자) : ㅇㅇ은행, 계좌번호 ㅇㅇㅇ, 예금주 ㅇㅇㅇ
 - 2. ㅇㅇㅇ회사 : ㅇㅇ은행, 계좌번호 ㅇㅇㅇ, 예금주 ㅇㅇㅇ

제9조(구성원의 분담내용)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.

[예시]

- 1. 일반공사의 경우
 - 가) ㅇㅇㅇ건설회사 : 토목공사
- 나) ㅇㅇㅇ건설회사 : 포장공사
- 2.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
 - 가) ㅇㅇㅇ건설회사 : 설비설치공사
- 나) ㅇㅇㅇ제조회사 : 설비제작
-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 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.
 - 1.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
 - 2.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, 해산, 부도, 법정관리, 워크아웃(기업구조조정

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), 중 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 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

제10조(공동비용의 분담)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.

제11조(구성원 상호간의 책임)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.

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,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제12조(권리·의무의 양도제한)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·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.

제13조(중도탈퇴에 대한 조치)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.

- 1.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
- 2. 파산, 해산,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
-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,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. 다만,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, 실적,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-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.

제14조(하자담보책임)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.

제15조(운영위원회)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 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.

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
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o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.

> 년 월 일 이 이 이 (인) 이 이 이 (인)